서울특별시 공무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799

제출년월일: 2024년 4월 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신설기구 • 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

- 3급 +7명, 3·4급 △2명, 4급 +10명, 4·5급 △6명
 - ▶ (본 청) 3급 +7명, 3·4급 △3명, 4급 +10명, 4·5급 △7명
 - ▶ (사업소) 4급 +1명
 - ▶ (합의제) 3·4급 +1명, 4급 △1명, 4·5급 +1명

나.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

- 5급이하 정원 및 전문경력관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장기결원 감원 및 직군 조정(5급이하△12, 전문경력관+3)
 - ▶ 서울대공원 동식물관리요원(임기제) 퇴직 대비 인력충원을 위한 전문경력관 다군 조정
 사항 포함 (5급이하 △4 → 전문경력관 +4)
 - ▶ 물재생센터 위험물취급요원(전문경력관) 장기결원 정원 조정 사항 포함 (전문경력관 △1 → 5급이하+1)

- 다. 조직·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
 - 본청 △1 → 합의제 +1
 - ▶ 합의제 감사위원회 '청렴담당관'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(1명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(1)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 - (2)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(한 시기구의 설치운영), 제30조(정원의 규정), 별표2(시·도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)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첨부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 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 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 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24. 3. 29. ~ 4. 2.) 결과: 의견제출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"10,521명"을 "10,52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226 명"을 "227명"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 조제1항 관련)

л н	-n	H -31	의 회	기스키기	11011	합 의 제
구 분	계	본 청	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행정기관
총 계	11,730					1
정무직 계	4					
시 장	1	1				
부시장	1	1				
서울특별시						
자치경찰위원회	1					1
위원장						
서울특별시						
자치경찰위원회	1					1
상임위원						
일반직 계	10,700					
1급	7	6	1			
2·3급	26	21		1	3	1
3급	25	15		1	9	
3 · 4급	3	2				1
4급	269	164	19	8	71	7
4·5급	2	1				1
5급 이하 소계	10,208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0					
별정직 계	37					
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연구직 계	410					
연구관	73	8		41	24	
연구사	337					
지도직 계	25					
지도관	3			3		
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 무 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지도사	22					
교육공무원 계	554					
총 장	1			1		
교수 등	476			476		
조 교	77					

^{※ 2024}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, 5급 이하 소계는 10,207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	현			행				-	개	정		안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								제2조(정원	의	총스	<u>`</u>) -			
두는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														
한다) 정	한다) 정원의 총수는 19,167명													
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부터								1						
제6호이	叫	른	공무	-원	의 >	정원을								- — — -
제외한	다):	<u>10,</u>	521	명_						: <u>1</u>	.0,52	20명]	
$2. \sim 4.$	(생	릳	‡)			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				
5. 합의저]] 행정	덩기	관의	의 경	성원	: <u>226</u>		5: 227						
<u>명</u>														
6. (생	략)							6. (현행과 같음)						
[별표 4] 소	방공-	무유	l과	경찰	날공.	무원을		 [별표 4]						
- 제외한 공두							-							
정원(제4조기	제1항	· 관	·련)				-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		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총 계	11,730							총 계	11,730					
		(생략	:)				(현행과 같음)							
일반직 계	10,700							일반직 계	10,700					
		(생략	:)		1				1	(생략	F)			
3급	18	8		1	9			3급	25	15		1	9	
3· 4급	5	<u>5</u>	10	0	70	<u><신설></u>		3· 4급	3	2	10	0	71	1 7
4급 4· 5급	259 8	154 8	19	8	70	<u>8</u> <신설>		4급 4· 5급	269 2	164 1	19	8	71	7 1
5급 이하 소계	10,220	Q				70.52		5급 이하 소계	10,208	1				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60					
	201	 (생략	:)					22072		<u>.</u> 행과	간은)			
		(생략												
	(생략)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	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	(생략)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	
								※ 2024년 7월 일반직 4급 165로 하며	계는	270.	으로 さ	하고	4급 ·	본청은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정원 19,167명을 유지하되, 직급 조정 및 직군 조정 관련 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

소요인건비 및 기구운영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ㅇ 인력운영경비	170,725	349,986	358,735	367,704	376,896	1,624,046
지출	○ 기구운영경비	54,550	109,100	109,100	109,100	109,100	490,950
	소계(a)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	0						
수입	0						
	소계(b)						
	총 비용(a-b)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
- ※ **인력운영비**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**2.5**%('24년 기준) 적용 추계
- ※ <u>1차년도</u>는 정원 배정시기를 고려하여, <u>6개월을 기준</u>으로 함 [정원배정 : 2024.7월(예정)]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국비						
	지방세수입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시비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225,275	459,086	467,835	476,804	485,996	2,114,996

- 5. 덧붙이는 의견
- 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. 정원 변동내역 : 총정원 변동없음
 - 일반직 : (-)
 - 3급 +7, 3.4급 △2, 4급 +10, 4.5급 △6, 6급 △8, 9급 △4
 - 전문경력관 나군 △1, 전문경력관 다군 +4
 - 2. 비용소요 추계: +450,550천원
 -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차년도 12개월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
	+450,550	* 총 계 : +450,550 ①덕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341,450 ▷ 3급(+7) : 118,172 × 7명 = 827,205 ▷ 3.4급(△2) : 118,172 × △2명 = -236,344 ▷ 4급(+10) : 100,252 × 10명 = 1,002,521 ▷ 4.5급(△6) : 100,252 × △6명 = -601,512 ▷ 6급(△8) : 75,817 × △8명 = -606,535 ▷ 9급(△4) : 44,200 × △4명 = -176,799 ▷ 전문경력관 나군(△1) : 71,598 × △1명 = -71,598 ▷ 전문경력관 다군(+4) : 51,128 × 4명 = 204,513 ※ 인력운영비 : 기본급, 수당, 연금부담금, 건강보험금 등 포함 [기구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] : 109,100 ▷ 3급(+7) : 14,700 × 7명 = 102,900 ▷ 3.4급(△2) : 12,500 × △2명 = -25,000 ▷ 4급(+10) : 4,200 × 10명 = 42,000 ▷ 4.5급(△6) : 1,800 × △6명 = -10,800 ※ 가구운영비 : 업무추진비, 직책급 포함